

강릉시 공고 제 2022 - 1588호

「강릉시 공영장례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강릉시 장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목적(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라. 지원대상(안 제4조)
- 마. 지원방법(안 제5조)
- 바. 지원내용(안 제6조)
- 사. 지원신청 등(안 제7조)
- 아. 업무대행(안 제8조)

자. 점검(안 제9조)

차. 환수(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장(참조: 생활보장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5층 / 생활보장과
- 전화: 033-640-5138
- 팩스: 033-640-477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함

(※송부 후 반드시 전화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요망)

6.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생활보장과(전화: 033-640-5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강릉시 공영장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

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일회적 장례용품
2.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3.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 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150 퍼센트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사람 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레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레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레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레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장레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레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레업체·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공영장래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동의서

강릉시는 공영장래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공영장래 지원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공영장래 지원	5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중요·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정도, 생년월일	공영장래 지원	5년

※ 위의 중요·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